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12월 3일, 박충권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년 2월 26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년 3월 6일)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2025년 3월 11일)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충권 의원)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
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정되는 공무원들이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
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직업훈련업무, 제17조에 따른
취업보호업무, 제22조에 따른 거주지 보호업무, 제22조의2에 따른 거

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종사자 교육 대상을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거주지 보호(제22조), 신변보호(제22조의2) 업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대상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인력 또한 다양하므로, 향후 교육 대상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함께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

한정애의원, 박충권의원, 김건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